

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안

(장혜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678
----------	-------

발의연월일 : 2024. 5. 20.

발 의 자 : 장혜영 · 강은미 · 배진교
심상정 · 양경규 · 이자스민
강성희 · 김홍걸 · 용혜인
윤미향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상 성별의 정정은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성전환수술을 받은 성전환자에 한하여 대법원 예규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법원의 결정으로 성별정정허가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별의 정정에 있어서 성전환수술을 받은 성전환자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별의 정정을 희망하는 사람은 원치 않는 성전환수술을 강요받는 측면이 존재한다는 점, 성별정정절차에 있어서 신청요건이나 필요한 서류의 구체적 내용을 일반인으로서 알기 어렵다는 점, 절차진행 중 이유 없는 심리지연이나 심문과정에서 판사의 모욕적 언사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까지 성전환수술을 받은 성전환자들에 한정하여 인정되어

은 성별의 정정을 성전환수술 여부나 혼인 여부,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자신의 성별정체성에 따라 성별의 법적 인정(Legal Gender Recognition)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개인의 인격권과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 가. 성별의 법적 인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각자의 성별정체성에 따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리고 사회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당한 권익을 자유로이 실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성별의 법적 인정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이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 다. 성별의 법적 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서면으로 성별의 법적 인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라. 성별의 법적 인정의 신청에 대한 심리와 관련하여 이에 대한 특별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
- 마. 신청인이 성별의 법적 인정의 신청과 동시에 또는 그 신청의 심리 중에 개명허가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법원이 이를 병합하여 심리,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바. 성별의 법적 인정의 결정을 받은 사람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사. 성별의 법적 인정의 결정을 받은 사람은 법원이 성별의 법적 인정 결정을 고지한 때로부터 법적 인정을 받은 성별이 가지는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함(안 제12조).

아. 성별의 법적 인정과 관련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5조).

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성별의 법적 인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각자의 성별정체성에 따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리고 사회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당한 권익을 자유로이 실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성별의 법적 인정”이라 함은 자신의 성별정체성에 따라 인식하고 살아가는 성별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성별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이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인권의 존중) 성별의 법적 인정과 관련된 모든 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제4조(차별금지) 누구든지 성별의 법적 인정을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그 당사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성별의 법적 인정) ① 성별의 법적 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서 서면으로 성별의 법적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성별의 법적 인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

여야 한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및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2. 신청인의 성별정체성에 대하여 진단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감정서
 3. 신청인이 자신의 성별정체성에 대하여 직접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성장환경진술서
- ③ 성별의 법적 인정에 있어 성전환수술을 포함한 의료적 조치는 요구되지 않는다.

제6조(미성년자 성별의 법적 인정) ①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성별의 법적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미성년자가 성별의 법적 인정을 신청한 경우 제5조제2항 각호의 서류에 더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거나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제8조의 심리를 거쳐 성별의 법적 인정 결정을 할 수 있다.

제7조(사실조회) 성별의 법적 인정의 신청을 처리하는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사실조회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가정법원의 심리) ① 가정법원은 성별의 법적 인정의 신청에 대한 심리(審理)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을 심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문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정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신청인이 첨부한 제5조제2항제2호의 진단과 관련한 진료기록 감정을 촉탁할 수 있다.

④ 가정법원은 제1항의 심문을 실시하는 경우 심문의 전부를 녹음 또는 속기하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가정법원의 결정) ① 가정법원은 신청인이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고 성별의 법적 인정을 구할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별의 법적 인정을 허가하여야 한다.

② 가정법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별의 법적 인정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③ 가정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별의 법적 인정의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0조(개명허가의 신청) ① 신청인은 성별의 법적 인정의 신청과 동시에 또는 그 신청의 심리 중에 개명허가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성별의 법적 인정과 병합하여 심리, 결정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개명허가의 결정과 관련하여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성별의 정정신청) ① 이 법에 의하여 성별의 법적 인정의 결정을 받은 사람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제1항

에 따른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법에 의하여 성별의 법적 인정의 결정을 받은 사람은 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성별의 법적 인정의 효력) 이 법에 의하여 성별의 법적 인정의 결정을 받은 사람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이 성별의 법적 인정 결정을 고지한 때로부터 법적 인정을 받은 성별이 가지는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제13조(성별의 법적 인정 절차 검토) 법무부장관은 이 법이 시행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이 법의 시행 결과, 신청인들의 의견, 국제인권규범 등을 고려하여 성별의 법적 인정 절차를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법률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다른 법률의 준용) 성별의 법적 인정의 신청 및 결정 등의 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정법원의 심리와 그 결정에 대한 항고에 관하여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및 「비송사건절차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비밀누설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사람이 성별의 법적 인정과 관련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나 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련한 사무를 담당하거나 그 기록을 유지·관리하는 사람
2. 신청인의 성별정체성에 대하여 진단·진료 또는 감정에 참여한 의료인

제1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성별의 법적 인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